

2022. 12. 2.[금]
기획경제위원회

제안설명서

-
1.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 2.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



경제실

□ 존경하는 『김 명 숙』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!

-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,
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
경제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
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-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,
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총 2건의 조례안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의사일정 제1항 「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니다.

- 개정사유는, 경제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
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문장형식에 맞도록
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

[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]

-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근거 법령인 「중소기업진흥에
관한 법률」과 시행령이 '22. 1. 25. 「지역중소기업
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과 시행령으로
제·개정 됨에 따라
-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6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
개정 반영하였습니다.

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「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니다.

- 현재, 투자유치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, 정무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나
- 기업 투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요하는 위원회 특성상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변경코자 합니다.

[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]

-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을 충청남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, 부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경제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□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2개의 조례안은 각각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, 투자유치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
-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2년 12월 2일

경제실장 길 영 식